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-0298호

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23일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1. 융자 규모 : 100억원

2. 시행 일정

○ 신청서류 접수기간 : 2020.10.26.(월) ~ 2020.11.20.(금) *방문접수

○ 신청서류 접수처 :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

* 콜센터(1588-7365)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**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**

[☏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]

지역	전 화 번 호	지역	전 화 번 호
서울 본점	1577-6119	부산 본점	051-860-6600
대구 본점	053-560-6300	인천 본점	1577-3790
광주 본점	062-950-0011	대전 본점	042-380-3800
울산 본점	052-289-2300	경기 본점	1577-5900
강원 본점	033-260-0001	충북 본점	043-249-5700
충남 본점	041-530-3800	전북 본점	063-230-3333
전남 본점	061-729-0600	경북 본점	054-474-7100
경남 본점	1644-2900	**※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**	

○ 융자금 신청기간 : 2020.10.26.(월) ~ 2020.12.4.(금)

- 융자금 신청처 : NH농협은행 영업점
- 융자금 대출실행은 2020.12.17.(목)까지 완료해야함

○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

3. 신청 한도 및 지원대상

ㅇ 신청 한도 : 최대 1억5천만원

ㅇ 지원대상

- 「관광진흥법」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- NICE평가정보(주)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~8등급인 자

※ 대기업, 중견기업,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

* 대기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
*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상의 중견기업

4. 대출기간 :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

5. 대출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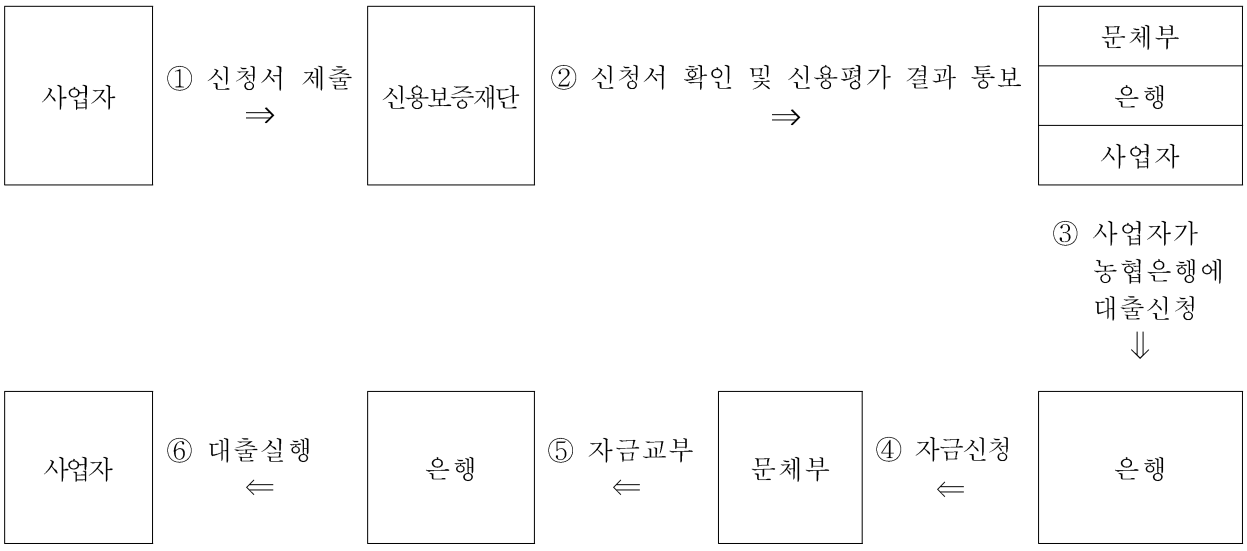
ㅇ 기준금리 :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'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'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, 그 하한은 2.25%로 함(*2020년 4/4분기 기준금리 : 2.25%)

ㅇ 대출금리 : 기준금리에서 1.25%p 차감

6. 소요자금 신청범위

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,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

7. 지원 절차



① 관광사업자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

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결과를 관광사업자, 문화체육관광부, NH농협은행으로 통보

③ 관광사업자가 NH농협은행으로 대출신청

④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체부로 자금신청

⑤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자금교부

⑥ 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자금교부

8. 유의사항

가. 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

나. 관광사업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 불가

다. 관광사업자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야 함

라. 융자 취급은행 영업점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전 신중한 검토 바람

마.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,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.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.

바.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'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'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(표준서식)를 제출

사. 이 지침은 「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(2020.10.23.)」 공고분에 대해서 적용하며,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.

9.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

가.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.

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,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

ㅇ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

ㅇ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(처분일자 기준) 3회 이상 행정처분(주의 포함)을 받는 경우

ㅇ 문체부의 신용보증지원 없이 융자 가능한 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

※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(신용보증 포함)을 취소하고,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.

나.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.

ㅇ 최근 2년이내(처분일자 기준)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및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,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
10. 문의처 :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

가. 전자우편 : kkb8016@mcst.go.kr, sjh89@mcst.go.kr

나. 전화번호 : 044-203-2826, 2827

붙임 : 1. 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2.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

Ⅱ. 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
1. 일반여행업, 국내여행업, 국외여행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,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2.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거 호텔업(특급호텔 포함)을 운영 중인 자

  *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)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등급인정증 사본(가족호텔업,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)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3. 휴양콘도미니엄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4.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

ㅇ 신청자격

-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5. 야영장업

ㅇ 신청자격

-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6. 관광공연장업

ㅇ 신청자격

-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7. 국제회의시설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8. 국제회의기획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9. 외국인환자 유치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, 최근 2년이내(* 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.)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최근 2년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(* 한국보건산업진흥원)
-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(*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)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10. 종합유원시설업, 일반유원시설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11. 기타유원시설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12. 관광식당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13. 관광면세업(보세판매장)

ㅇ 신청자격

-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14. 관광면세업(사후면세점)

ㅇ 신청자격

-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
-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10에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15. 관광순환버스업

ㅇ 신청자격

-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16. 관광펜션업

ㅇ 신청자격

-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17. 한옥체험업

ㅇ 신청자격

-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18. 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

ㅇ 신청자격

-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(숙박업)을 받은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19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

ㅇ **신청자격**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**신청서류**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20. 관광사진업

ㅇ **신청자격**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**신청서류**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21. 관광유람선업

ㅇ **신청자격**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**신청서류**

- 융자신청서,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22.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23. 관광지원서비스업

ㅇ 신청자격
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24.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

ㅇ 신청자격

-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자

ㅇ 신청서류

- 융자신청서,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(KAHF) 획득기관 지정서 사본
-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
- 주민등록등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금융거래확인서

Ⅲ.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

▶▶ 1.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

1. 업무안내

ㅇ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

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,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또한 융자금과 관련하여 '은행법'이 정한 "구속행위"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.

ㅇ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최소단위 도입

구분	최소단위	비고
대하 / 전대신청	백만원	융자선정 최소단위 준용
기한전 상환	백만원	백만원 이상부터는 만원단위 적용 가능

ㅇ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

-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,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

- 기타 : 한국산업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

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금 수혜자로부터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'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'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(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)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람.

2. 사후관리

ㅇ 월별 융자현황(매월 익월 10일 이내), 반기별 융자현황(반기종료 익월 5일 이내) 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

ㅇ 융자금 **대하신청 및 원리금 상환 시 마다**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(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전화, 대표 성명 등)과 관광사업 등록(신고, 지정, 인증)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을 경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

ㅇ 융자취급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융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을 경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기 대출된 융자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융자취급은행에 상환명령하고,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

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조치함

-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,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
-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
-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(처분일자 기준) 3회 이상 행정처분(주의 포함)을 받는 경우

  *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 제공

○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 관리계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

-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

○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해주시기 바람

○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 시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,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

○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

- 은행은 기금 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

【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】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□ 목적

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
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·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·활용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① (지원이력정보)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,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

②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·휴·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
③ (인증정보) 기업의 인증·확인정보로서 신청일, 획득일, 유효기간 등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
○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□ 동의 효력기간

○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

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
○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

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기업명 ○○○

대표자 ○○○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▶▶▶ 2.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

○○신용보증재단 귀중

1. 신청기업

기 업 체 명		대 표 자		설립일자 (개업일자)	
사업자등록번호		법인(주민)번호		당기매출액 (또는 최근1년매출액)	
업 종		주요제품		상시종업원	명

2. 신청내용 (해당칸에 "√" 표시)

보 증 신 청 내 용		주 채 무 내 용	
보 증 종 류	대출보증	대 출 과 목	
보 증 금 액		대 출 금 액	
보 증 기 한	6년	용 도	운전자금
보 증 방 법	개별보증	대 출 기 한	6년
보 증 비 율	100 %	상 환 방 법	원금균등분할상환 (3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비 고			

※ 보증료 환급시 입금계좌 (본인계좌)

금융기관명		계좌번호		예금주	

■ 신용보증지원 없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 가능한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즉시 융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
■ 문체부 관광기금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등에는 보증신청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을 이용한 보증지원 불가할 수 있음
■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금융거래관련 부당행위자(금융질서문란정보)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되며,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음
■ 서비스개선을 위해 정부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문조사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
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신청금액은 일부 감액 또는 거절 될 수 있음

2020년 월 일

신청기업명 : 대표자 : (인)

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출코자 하오니 신용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 :	전화 :	팩스 :

대출취급기관 : 농협은행 ○○○○지점장 (인)

3. 대표자 관련사항 (※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작성)

성 명		주민등록번호		핸드폰	☎
				이메일	
대표자 주요경력	기 간	근 무 처		담당업무	최종 직위
	-				
	-				
거 주 지	실제거주지	주소 : 자가, 임차 (보증금: 백만원, 월세: 천원)			
	주민등록상 거주지	주소 : 자가, 임차 (보증금: 백만원, 월세: 천원)			

4. 사업장 관련사항

본 사	주소 : 자가, 임차(보증금: 백만원, 월세: 천원)	전화번호	☎
		FAX	☎
주사업장	주소 : 자가, 임차(보증금: 백만원, 월세: 천원)	전화번호	☎
		FAX	☎

5. 자산 및 부채현황 (사업장 및 거주주택 이외)

자산	부동산	( )백만원 (소재지 :) ( )백만원 (소재지 :) ( )백만원 (소재지 :)	부채	대출금	( )백만원 (은행명 :) ( )백만원 (은행명 :) ( )백만원 (은행명 :)
	예·적금	( )백만원 (은행명 :) ( )백만원 (은행명 :) ( )백만원 (은행명 :)		기 타	( )백만원 (내 용 :) ( )백만원 (내 용 :) ( )백만원 (내 용 :)

6. 경영진 및 주요주주 (20 년 월 일 현재) (※ 법인기업의 경우만 작성)

경영진	직위	성명	연령	대표자와 관계	주요경력	주요주주	성명	대표자와 관계	소유주식	점유비(%)